

의안번호	2212539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5.10.16.
추계번호	25B47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 8,200만원(연평균 1억 1,6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탄소예산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함.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봄(제1항)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의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계는 해당 연계법률안에서 실시하므로 본 개정안의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분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050년까지의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함(제3항)	
2	안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신설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5조(국가기후위원회의 설치)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둔(제1항)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9.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7.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안 제16조의2(위원회의 구성)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함(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제2항)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4.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을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제4항)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됨(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6	안 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분과위원회 2. 기후변화 적응 분과위원회	의무· 재량규정
7	안 제22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신설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둠(제1항) 기후시민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둠(제2항)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장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 참여·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5.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기후시민회의는 매년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8	안 제22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신설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분석·예측·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제1항)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함(제2항)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다만,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제3항) 1. 기후과학·환경과학·경제학·사회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 및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을 준용함. 이 경우 “위원회”를 “기후과학위원회”로 봄(제4항) 기후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센터를 둠(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예측·검증함(제1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신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9.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른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동향에 관한 사항 12. 제47조에 따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에 관한 사항 13. 제77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15. 국회 및 위원회에서 분석 등을 요청한 사항 16.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의무규정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평가·분석·예측·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기후과학위원회는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의 보고서 및 정책 등의 수정·변경에 관한 권고 사항을 기후과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0	안 제22조의 5(정책 등의 수정·변경 권고 등) 신설	정부와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때에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는 해당 법령 또는 행정계획, 정책의 수립·변경, 예산에 그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받은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2항)	
		기후과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2	안 제8조의2 (탄소예산 산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15조 (국가기후위원회의 설치)	×	·제3호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경우 위원 보수 및 수당, 사무처 운영비, 기본경비, 주요 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위원 보수 및 수당) 국가기후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안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상임위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상임위원별
4	안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6조의2 (위원회의 구성)		직급 등 국가기후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사무처 운영비) 국가기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처의 구성 규모 또한 변동되어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무처 조직 및 정원의 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기본경비) 국가기후위원회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국가기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무처 직원의 규모 및 구성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주요 사업비) 개정안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 국가기후위원회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국가기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순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국가기후위원회가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기타)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지방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어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부대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2025년 기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은 위원회 운영비 26억 1,100만원, 사무처 운영비 24억 3,800만원 등 총 50억 4,900만원임
6	안 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7	안 제22조의2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미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기후시민회의의 운영 비용을 포함하여 편성했고, 2026년부터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22조의3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 보수, 기후과학센터 운영비, 기본경비, 주요 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9	안 제22조의4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위원 보수)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정무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상임위원에게는 고위 공무원단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상임위원별 직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
10	안 제22조의 5 (정책 등의 수정·변경 권고 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기후과학센터 운영비) 개정안은 기후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센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후과학센터의 설치 방법, 인력의 규모 및 구성,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기본경비) 기후과학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가 인건비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후과학위원회 위원 및 기후과학센터의 직원 규모 및 구성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탄소예산²⁾을 산출할 경우,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예산 설정은 고도의 분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서는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탄소예산 산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종전의 환경부가 발주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2021년, 1억 6,000만원),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평가”(2023년, 3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2023년, 1억 2,250만원)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1억 9,400만원으로 가정함
 -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6년부터 2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5억 8,200만원이 발생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탄소예산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추진계획(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배경

-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관한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등 다각적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
 - 국정과제 4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기후시민회의의 공론장 마련 (8.13)

□ 필요성

-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참여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립상황 발생,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 법제 정비를 위해 국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청소년 기후단체 등 장기 감축경로 설정 관련 **헌법소원** 제기('20~'23, 5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요구('24~'25, 충남·경남) 등

□ 추진계획

-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
 - (구성) 지역·성·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전 국민 축소판으로 구성
 - * 2050년 당사자가 되는 미래세대(10~30대)의 비율은 약10~20% 추가 모집 검토
 - (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쟁점에 대한 논의·공론
- 기후 정책 토론 등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학습지원
 -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토론을 위한 전문가·교육자료 지원
 - 참여자의 지식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닝 시스템 운영
-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기후·탄소중립 정책 제안 및 실현을 위한 지원
 - 중장기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 등 기반 마련
 - 국민참여 정책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

□ 활동기간 : 매년 약10개월 (‘26~’30)

□ 2026년 예산(안) : 1,800백만원

세부내역	정책확산
① 기후시민회의 운영 - 탄소중립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 소요비용 : 1억 = 250명x40만원 - 출범식 등 행사 및 주제학습 : 2.7억 = 250명x4회x27만원 - 심층 논의 과정 진행 : 2억 = 250명x4회x20만원 - 국민대토론회 : 3.5억x1식(TV토론회 등 연계) - 활동 기록물 제작(영상백서 등) : 2억x1식 ② 온라인 속의 시스템(이러닝 학습 및 통계) : 450백만원 ③ 대국민 의견수렴 - 설계기획 15백만원(15백만원×1회) - 검증자문 15백만원(15백만원×1회) - 모집단 구성 및 패널추출 10백만원(2백만원x5회) - 패널조사 등 10백만원(5백만원×2회) - 설문사례비 100백만원(5천원×10,000명x2회) - 결과분석 40백만원(20백만원×2식) - 의결수렴 결과 인포그래픽 등 제작 40백만원(40백만원×1식)	- 지상파TV 및 관계부처 공식 유튜브 등 협업 - 탄녹위 공식 홈페이지 등 대국민 공개